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5.(목)

국가 정책적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며,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에 환류합니다.

<보도내용>

□ 2026.11.5. 한국일보는 「내년 예산안 '예타 면제' 사업 140조…검증 부실 우려」 기사에서,

○ "내년도 예산안에서 130조원 규모의 사업이 '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'는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'예타')를 면제받으면서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"고 하면서,

○ "국가재정법은 제10호에 따른 예타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8월 25일 예타 면제가 결정된 32개 사업 가운데 26개 사업이 불과 일주일 뒤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"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구체적 면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타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(10호 면제)은 부처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추진 필요성과 예타 면제를 심의·의결하며, 면제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아울러, 10호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‘사업계획 적정성 검토’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대형 재정사업에 대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증하고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합니다.

□ 다만,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예산안 편성 시 사업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,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10호 취지를 고려하여 예타 면제 후 예산안에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

○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‘27년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하는 등 법정 의무를 준수할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, 예타 면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강미자 (044-214-3310) 최현화 (hyunhwa@korea.kr)
	예산실 예산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	박정민 (044-214-2310) 김진수 (kjs62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